"도시철도 최고의 기업. 일등 Metro"

서울메트로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**건강한 직장을 위한 금연 및 절주 재 강조**

1. 관련근거
   가.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,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
   나. 동작역 소재 주민 민원 2회 접수(콜센터_12.4/12.7)

2.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, 사무실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민원발생 및 간접 흡연 피해가 우려되니, 각 소속에서는 직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

3. 또한, **금연구역이 아닐지라도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및 통행로와 인접한 공사 건물에서는 흡연을 자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잦은 회식과 술자리가 예상되므로 직원의 건강관리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음주문화와 절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 주요내용

◆ **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· 운영(절대 금연구역화)**

◆ **흡연실 설치기준** (동법 시행규칙 별표2)
- **실내 흡연실 설치 절대 불가. 다만, 실외(옥상 포함)에 흡연실 설치 가능**
- **옥상 및 실외에 흡연실 설치 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 어야 함**
  (실외: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,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· 지붕 · 바람막이 설치 가능)
- **흡연실의 표지부착** :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

◆ **과태료 부과기준**
- **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주 등(법 제34조 1항) : 과태료 500만원**
- **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자(법 제34조 3항) : 과태료 10만원**

나. 금연 및 절주 안내

(1) 금연

○ 연결화면 : 메트로피아 → 건강마당 → 금연길라잡이
(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와 연계)

○ 제공내용 : 금연홍보 동영상, 금연매거진(전문가 상담, 칼럼, 공감마당 등), 자가진단프로그램, 질병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가능

(2) 절주

○ 관련자료 : 메트로피아 → 건강마당 → 안전보건교육방(신)

○ 제공내용 : 한국형 알코올리즘 간이선별 검사법, 우리나라의 음주실태, 알코올성 간장질환 등 자료제공

붙임 1.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(금연구역 등) 제3항 관련 [별표2] 1부.
2. 절주관련자료 1부. 끝.

안전관리처장

수신자 가1-19,나1-3,다1-3,라1-16,마1-13,바1-8

차장 방미양 차장 이훈복 팀장 휴가 처장 12/10 권환동

협조자

시행 안전관리처-5607(2015.12.10.) 접수 ( )

우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(방배동) / www.seoulmetro.co.kr

전화 5113 전송 5109 / bmiyang7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